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3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부천시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지금까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원미구 심곡1동 등 13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천시 전 지역에 실시하도록 함. (안 제4조 단서삭제)
- 지금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수수료를 매월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량장려 사업장등은 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 처리하고 분기별 처리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전지역 확대됨으로 수거함 관리가 비위생적일수 있는 문제점으로 한꺼번에 수거함을 세척하여 돌려주는 방법은 ? • 상가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침에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방법은 수거비용의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써 20ℓ가정용은 각 가정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120ℓ 수거함은 세척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수거업체와 상가 번영회등 별도 협약을 체결할시 정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할것임.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8호
의결 년월일	2004. 3. 19 (제111회)

제출년월일 : 2004. 3. 3.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지금까지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원미구 심곡1동 등 13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천시 전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안 제4조 단서삭제)
- 지금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수수료를 매월 징수 하였으나,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량장려사업장등은 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처리하고 분기별 처리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2조)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전용봉투”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판매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량장려사업장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3과 같이 수집·운반업체와 배출량에 따라 상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배출자가 부담하고, 처리비용은 수집·운반업체에서 부담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분기별 감량장려사업장과의 계약현황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관리법란의 부과항목란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2조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시 산정방법

-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제2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산정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평균하여 별도 산정·부과할 수 있다.
 -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
 - 감량 의무사업장의 경우 : 킬로그램당 50~85원
 - 감량 장려사업장의 경우
 - 기본료 : 1일 20리터 쓰레기봉투 사용가격을 기준하여 연동제로 별도고시
 - 기본량 초과시 : 킬로그램당 50~85원

다. 시 자원화시설 처리 수수료

- 감량장려사업장등과 수거업체 계약물량 × 킬로그램당 처리비용
- ※ 킬로그램당 처리비용은 별도기준 고시

<신 설>

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대행) ①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징수·납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자 또는 대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한 때에는 시장 또는 수집·운반 대행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분기별 감량장려사업장과의 계약현황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